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12.

정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8. 21., 정부

나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○ 제418회 국회(정기회)

-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(2024. 11. 13.)

-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(2024. 11. 28.)

상정, 축조심사, 의결(원안가결)

- 제9차 정무위원회 (2024. 12. 3.)

상정, 소위심사보고, 찬반토론, 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정부)

종전에는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본인과 ‘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’의 소득·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.

※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8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3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강민국의원)

- 원안대로 의결함.

4. 찬반토론 요지

없 음

5. 심사결과

원안가결

※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·자구 심사를 거침.

[붙임]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 호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”을 “가구원(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4제1항 중 “부양의무자”를 각각 “가구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부양의무자가”를 “가구원이”로 한다.

제12조의5제1항 중 “부양의무자가”를 “가구원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부양의무자”를 “가구원”으로 한다.

제84조 전단 중 “부양의무자가 없는”을 “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없는”으로 한다.

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생계급여·의료급여”를 “생계급여·주거급여·의료급여·교육급여”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의3(교육지원 신청) ① (생략)	제12조의3(교육지원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가구원(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</u> 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의4(조사·질문 등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(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그 <u>부양의무자</u> 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·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	제12조의4(조사·질문 등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가구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가
구원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가구원이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5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

-----가구원이-----
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·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“금융정보등”이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~ ⑦ (생략)

[illegible]

② _____

----- 가구원 -----

[illegible]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84조(양로지원) 5·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(자녀는 제외한다)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(5·18민주화운동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,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)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(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5·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.

제95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 등)
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항, 재외국민등록사항, 군복무에 관한 자료, 국세·지방세에 관한 자료, 소득·재산에 관한 자료, 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·보험에 관한 자료,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에 관

제84조(양로지원) -----

-- 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

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없

는 -----

-----.

-----.

제95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 등)

① -----

생계급여·주거급여·의료급여

한 자료,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1. ~ 13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	· <u>교육급여</u>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	--